

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유성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39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9. 14.

발 의 자 : 유성엽 · 이찬열 · 정동영  
황주홍 · 김종회 · 장정숙  
최명길 · 오세정 · 이용호  
이동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관련 정책의 실현으로 대학 폐쇄·폐지 및 학교법인 해산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(폐쇄·폐지 대학 재적생, 학부모 및 소속 교직원 등)의 피해와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, 국고로 귀속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활용이 시급함에 따라,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정책 이해도가 높고 공공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를 관리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이에 따라 「사립학교법」 제35조에 따라 관리·운영해야 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사학진흥기금 내에 별도 계정으로 조성·운영하도록 하고, 자금의 재원 및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「사립학교법」 제35조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으로 관리·운영해야 하는 경우를 「한국사학진흥재단법」 제18조(기금의 조성)의 사유로 추가함(안 제18조제1항제7호 신설).
- 나. 조성된 기금은 사학진흥기금 내에 별도 계정으로 분리·구분하여 운영하고, 「사립학교법」 제35조제3항에서 정한 용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제5호 신설 및 제20조제3항 신설).

##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사립학교법」 제35조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 폐쇄·폐지 학교법인의 재산

제19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사립학교법」 제35조제3항에 따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
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조성하고, 제19조제5호에 따라 사용되는 기금은 별도 계정으로 분리·구분하여 운영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9조(기금의 사용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.</p> <p>1.~ 4의2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(생략)</p> <p>제20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~ 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8조(기금의 조성) ①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「<u>사립학교법</u>」 제35조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 <u>폐쇄·폐지 학교법인의 재산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(기금의 사용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 4의2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<u>사립학교법</u>」 제35조제3항에 따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제20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조성하고, 제19조제5호에 따라 사용되는 기금은 별도 계정으로 분리·구분하여 운영한다.</u></p>